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중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9

발의년월일 : 2018년 10월 8일

발 의 자 : 성중기 의원(1명)

찬 성 자 : 우형찬, 경만선, 정지권, 송도호,
정진철, 이은주, 송아량, 오중석,
김태호, 이승미, 추승우 의원(11명)

1. 제안이유

- 현행 조례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80%, 5·18 민주유공자와 경차 등의 이용자 등에 대해서는 50%, 전통시장 이용자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등에 30%의 주차요금 감면조항을 두고 있지만, 보훈보상대상자는 감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재해부상군경과 재해공무원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무에 종사했다는 점에서 서울시 주차장 감면대상으로 포함하여 예우를 다하고 그 공로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재해부상군경, 재해공무원 등 보훈보상대상자에 주차장 이용요금의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1항제11호).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 제11호에서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에 대한 주차요금 50% 감면을 규정함에 따라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상위법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 제2호 재해부상군경은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 제4호 재해부상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

나. 추계결과 ≒ 15,635천원(연평균 3,127천원)

- 예상되는 수입감소액은 5년동안 15,635천원으로 연평균 3,127천원임
-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기간은 2019년도부터 2023년

- 추계기간 동안 주차장 이용건수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함

○ 추계의 방법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주차요금 감면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전체 공영주차장 이용건수 중 국가유공자(상이자) 이용건수, 이용횟수를 활용함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제6조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80을 할인한다.

- 2018년 8월말 기준 서울시 거주 재해부상군경은 634명, 재해부상공무원은 6명으로 확인됨((붙임 1) 보훈대상별 현황(서울시) 참조)

- 2017년도 서울시 공영주차장 국가유공자(상이자) 주차요금 258,630천원, 이용 건수는 38,095 ((붙임 2) 국가유공자(상이자) 감면현황 참조)

※ 2017년말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는 전체 국가유공자(116,835명)의 22.6%인 26,398명

=상이군경(전상/공상군경) 18,505명+고엽제후유의증자 7,506명+4.19유공자 315명+기타유공자중 6.18자유상이자 72명

- 서울시 보훈대상자 현황

(2017.12.31. 기준, 단위 : 명)

계	독립유공자 및 유족	상이군경 (전상/공상)	전몰순직 군경유족	무공보국 수훈자	4.19 유공자	5.18 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자	특수임무 유공자	참전 유공자	기타국가 유공자
116,835	1,958	18,505	21,173	22,497	315	594	7,506	592	43,543	152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15,635천원(연평균 3,127천원)

- 산출 방식 $\sum_{i=1}^5$ (연간 재해부상군경 주차요금 감면 + 연간 재해부상공무원 주차요금 감면) i

※ i = 비용추계 연차(2019~2023년)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2019	2020						
세입	조례안 제7조 제11호	재해부상군경 주차요금 감면		3,096	3,096	3,096	3,096	3,096	15,480
		재해부상공무원 주차요금 감면		31	31	31	31	31	155
	소계(a)			3,127	3,127	3,127	3,127	3,127	15,635
세출	-		-	-	-	-	-	-	-
	소계(b)		-	-	-	-	-	-	-
□ 총 비용(b-a)									

○ 재해부상군경 주차요금 감면 ≍ 15,480천원

- 산출방식 $\sum_{i=1}^5$ (연간 재해부상군경 주차요금 감면)_i

※ i = 비용추계 연차(2019~2023년)

- 연간 재해부상군경 주차요금 감면액 = 이용 건수* × 전당 요금* × 할인율(50%)
= 912건 × 6,790원 × 0.5 = 3,096천원

(이용 건수, 전당 요금은 2017년 서울시 국가유공자가 이용한 건수와 금액을 적용)

· 이용 건수 = 재해부상군경 인원 × 연평균 이용횟수 *

= 634명 × 1.44회 = 912건

※ (재해부상군경의 1인당) 연평균 이용횟수

= '17년 국가유공자(상이자) 이용 건수 ÷ 국가유공자(상이자) 인원

= 38,095건 ÷ 26,398명 = 1.44회

· 전당 요금 = '17년 국가유공자(상이자) 주차요금 합계/국가유공자(상이자) 주차
건수

= 258,630천원/38,095건 = 6,790원

○ 재해부상공무원 주차요금 감면 ≍ 155천원

- 산출방식 $\sum_{i=1}^5$ (연간 재해부상공무원 주차요금 감면)_i

※ i = 비용추계 연차(2019~2023년)

- 연간 재해부상공무원 주차요금 감면액 = 이용 건수* × 전당 요금* × 할인율(50%)
= 9건 × 6,790원 × 0.5 = 31천원

· 이용 건수 = 재해부상공무원 인원 × 연평균 이용횟수*
 = 6명 × 1.44회 = 9건

※ (재해부상근경의 1인당) 연평균 이용횟수

= '17년 국가유공자(상이자) 주차요금감면 건수 ÷ 국가유공자(상이자) 인원
 = 38,095건 ÷ 26,398명 = 1.44회

· 건당 요금 = '17년 국가유공자(상이자) 주차요금 합계/국가유공자(상이자) 주차 건수
 = 258,630천원/38,095건 = 6,790원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 승 우
정책조사팀장	여 차 민
분 석 관	박 종 철

☎ 02-2180-7943 e-mail : pjc99@seoul.go.kr